綜合的인 프라이버시保護法을 制定하여 個人의 私生活을 保護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지난 94. 1. 7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關한法律(法律第4734號)」를 制定하여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있지만 상당히 未洽하다는 評價를 받고 있습니다.

貴 黨에서는 個人의 프라이버시權 保護를 위한 具體的인 政策案을 가지고 있습니까?

「統合프라이버시保護法」制定 主張에 대한 貴 黨의 意見은 무엇입니까?

<답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처리가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더욱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련의 실정 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 특히 컴퓨터의 대량보급으로 만들어진 환경속에서 발생하는 전자통신의 사생활에 대한 보장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사생활보호법'이 1986년에 통과된 이래, 이 법이 과연 전자생활을 충실히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사건 등 새로운 사생활 침해 기법의 발달로 생겨난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침해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침해로부터 전자통신메시지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수단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정보 수집의 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정보수집은 정부주체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허락과 참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행 법은 열람청구를 원보유기관과 피제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정정청구의 경우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원보유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피제공기관에 대한 정정청구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은 당해 법령의 개정 또는 당해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의해 무효가 결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넘어서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에 대한 사전통보 등 사전규제절차를 통하여 보유대상 정보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보처리권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 및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정보처리와 관련한 외부통제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통합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과 관련,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적

분야와 민간분야를 함께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옴니버스(omnibu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공적분야와 사적분야를 별개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별개의 영역에 대하여 별개의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이른바 세그먼트(segment)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별개의 분야로 별도의 입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각국의 특성 및 법체계와 관련하여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민간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보호법의 제정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의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6.

國民의 便宜를 위한다는 名目으로 1991年 1月 14日 改正된 住民登錄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行政電算網의 故障率은 선진국의 10倍 이상으로 推定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건 이상의 故障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 市民生活의 不便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大檢의 發表에 의하면 93年 한해에 個人情報의 流出事故가 2百92萬 件에 달했다고 報道되고 있습니다.

國會의 國政監査時 이에 대한 實態와 現況에 대한 國政監査를 實施하였습니까? 國政監査를 實施하였다면 이에 대한 資料를 갖고 있을텐데. 國民의 生命 및 安全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는데, 貴 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 정보의 불법유출, 남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은 국정감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정부에 그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관련자료 등은 관계의원들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며, 그 공개여부는 자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자료가 성격 및 내용상 비밀유지 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7. 8.

공대위 확대회의 회의결과

1. 참석자

KNCC인권위 김용현목사, 민변 김기중변호사, 지식인연대 이종회사무처장, 민교협 강내희정책위장, 민가협 김희선총무, 사랑방 박래군국장, 정보연대 오병일, 고영경, 참여연대 이샛별, 천주교인권위 오창익국장, 청년정보문화센타 박준호, 한과협, 범국소비자연맹, 통일시대국민회의 김종빈, 전국연합 안태원정보통신부장, 제주 공대위 양동 공대표, 정보보호사무처장, 광주 빛고을정보공동체 최정식

2. 상황보고

제주확동의 경과, 광주지역 공대위 결성상황, 참여단체 상황, 국회의원 면담 결과 등

3. 논의결과

■ 시위

. 일시 : 1997. 7. 15.(화) 12:00

. 장소 : 국회앞에서 약식집회와 그 부근 행진

. 참가예정인원 : 300여명(각 단체 동원가능한 최대인원 동원 및 대표자 참석)

. 공대행사 : 신한국당 대표면담요청과 항의서한 전달

. 시위범범 : 성명서 낭독, 피켓, 구호제창, 바코드 목걸이 패용, 일부 가면착용

. 시위준비 : 참여연대, 지식인연대, 정보연대

(유인물, 피켓, 프래카드, 스피커 등, 책상, 운반차량, 바코드 목걸이, 가면, 구호준비 등)

■ 대표자 연석 기자회견

. 민주연대 대표자 기자회견 예정

. 민주연대 대표자 기자회견과 별도로 기자회견 실행하기로...

※ 그러나 날자조정과 대표자들의 중복 문제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

대표자들의 일정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일 기자회견 준비중.

※ 예정하고 있던 날자가 변경되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7. 7. 15.(화) 10:0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 참여단체 : 민주연대(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강사회보건의료대표자회의, 민중탄대책위, 민예총, 이인, 민변, 민교협), KNCC,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사랑방, 범국소비자연맹, 제주공대위, 중앙공대위

. 방법 : 김진균, 김창국 공대위 공동대표 주재로 성명서 발표, 민주연대측 발언, 제주공대위측 발언

. 실무준비 : 민변(단체간 연락 및 보도자료 등), 천주교인권위(기자회견장 준비 등)

. 기자회견 종료후 여의도 시위장소로 이동(가능하면 이동차량 준비)

■ 종교인선언

. 종교인협의회에서 4개 종교계를 포괄하는 선언을 준비중

. 7. 14.로 예정하고 있음.

. 종교인 선언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7. 14.에 모든 소속단체가 개별 성명서를 내기로

■ 교수선언

. 민교협의 집행부 변경으로 민교협이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대위 주도로 교수선언을 준비하되 민교협 차원의 협조를 받기로

. 선언예정일은 7. 15. 또는 16.

■ 제주 공대위

. 대표자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로

. 서울시위에 참여하고, 지역별 시위도 추진하기로

. 제주지역 총협에 협조의뢰하며, 각계인사 서명작업에 협조하기로

■ 기타 제안

. 과학자선언, 변호사선언이 필요함.

. 광범위한 언론사 기고를 하여야 함.

. 지역구 의원에 대한 지역구 차원의 개별적 압력행사 필요

. 컴퓨터통신망 개설 필요

. 사체교육 강화 필요

4. 일 정

. 7. 9. 19:00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면담

. 7. 14.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내무위원회 상정

국회 내무위원회,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개최

종교인 선언 발표

각 단체별 성명서 일제히 발표(주민등록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 7. 15. 10:00 대표자 연석 기자회견

12:00 여의도 시위

. 7. 16. 교수 선언

. 7. 18. 국회 내무위원회, 상정된 법안 심의 · 의결(방청을 통한 압력행사)

5. 각 단체 협조사항

. 7. 14. 성명서 일제 발표, 국회 공청회 방청

. 7. 15. 카톨릭회관 대표자 기자회견 참석

여의도 시위 참석

E:\ID\HID\CARD36.HWP

기자회견 참고자료

주민등록법 전면개정과 전자주민카드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

(서울 · 명동:카톨릭회관 1997. 7. 15 사회단체대표 공동기자회견)

문제의 핵심

1.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법상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환상적인 편리성 만을 강조하고 있다.
3. 주민카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로비에 의혹이 있다.
4. 정책결정자 내지 주체가 없고, 정보기관의 참여와 정보남용 우려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5.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6. 정보화는 개인정보의 전산화가 아니라 전산화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1.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가. 현행 주민등록법은 제정 및 주요 개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비상대책기구에 의해 만들어져 행정편의를 지향했다.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자료집, (1997. 6), 49면이하)

나. 주민등록법은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도입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 의한 위헌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 관리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을 제도화하여 행정편의를 극대화시켰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법과생활, 1996. 275면)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비 고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이 본래의 목적(거주관계 및 인구이동)과 다른 곳에 이용되고 있다. (선거, 조세, 취학, 병역, 복지, 주택 등 국가 주요행정 사무처리에 이용) 2. 거주민등록제도(주민등록)와 신분등록제도(호적)의 구별이 없다. 3. 병역사항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 주민등록화일에 전산화되어 있다. (이는 방위전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각종 신고가 법적의무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의해 2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1. 행정상의 주민등록관리정보(현재 140개 정보)를 축소해야 한다. 2. 주민등록이 아니라 자율적 신고제도로 변경하여 강제성의 부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주소이전신고에는 많은 이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을 거부하는 자에게까지 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이다.	*미국·영국은 주민등록자체가 없음 *독일·프랑스는 임의적 주민등록제를 실시
주민등록증	1. 지역신분증으로 제작되어 있다. (발급기관이 시·군의 장이다) 2. 기재사항이 너무많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다. 3. 휴대의무가 있다. 4. 사법경찰관리의 요구에 제시의무가 있다. 5. 위·변조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많았다.	**제1안** : 신분증을 없애야 한다.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에 한계가 있으며, 위조와 변조가 심하므로) **제2안** : 임의적인 국가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안** : 현행을 유지하되 기재사항을 축소해야 한다.	신분증이 있는 나라의 경우 대부분은 임의적 신분증임
주민등록번호	1.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통제를 위한 기초숫자가 되고 있다.	**제1안** : 번호자체를 없애야 한다. **제2안** : 번호를 단순 일련번호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2. 정부는 주민카드의 환상적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 전자주민카드는 IC카드에 35개 항목의 정보를 내장하고, 겉면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발급기관장, 운전면허사항, 의료보험주의사항, 지문, 사진이 나타난 종합신분증이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내무부주민카드추진기획단은 주장한다. (내무부 주민카드추진기획단, 주민카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997. 4, 7면이하)

나. 93년부터 구축된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읍, 면, 동사무소에 가면 어디에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비용 600원) 전자

주민카드를 실시하더라도 이 비용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며(주민카드에 의한 등·초본 발급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효용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다. 면허증이 없을 때, 대체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 분실 및 미소지(未所持)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나, 전자주민카드없이 운전을 하면 당연히 경찰서까지 연행되어 신분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정부는 2~3일 안에 재발급한다거나 임시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업무시간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든지 전자주민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든지 병원의 서비스는 똑같다. 현재처럼 1~2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서비스의 개선이지, 전자주민카드 자체가 병원서비스의 개선은 아니다.(박홍윤, "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YMCA 시민중계실, 1997.6.5, 14면)

마. 전자주민카드는 고가이다. (IC카드의 가격은 3~7만원대, 신문자료에 의하면 1,2000원). 이러한 고가의 주민카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한다고 한다.(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제21조 8항). 그리고 재발급에 대한 비용을 각자 책임으로 할 예정이다.

83년이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2천만건에 이르는 실정(내무부, 주민카드사업토론자료-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1997, 13쪽) 임과 한해 300만건의 재발급이 이루지고(천주교인권위원회,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1997.6, 29쪽) 있음을 감안할 때, 주민카드의 분실에 의한 재발급비용은 천문학 숫자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될 것이다.

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은 자연히 주민카드에 대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장되고 있는 사항들인 비밀번호 재교부, 주변의 협조 등(천주교인권위원회, 정보사회의 인권문제「천주교인권위원회 심포지엄」, 1997.6, 23쪽)은 새로운 보안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리를 생각한다면, 정부자체의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만들어 낸 모든 문서는 비밀성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 전산화하여 국민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천주교인권위원회, 상게자료, 29

면) 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3. 대기업에 의한 로비의혹이 있다.

가. 삼성전자, 백두정보통신, 현대전자, LG정보통신, 한화종합화학, LG화학조폐공사 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1996. 12. 10-, 25쪽)

나. 이러한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전자통신분야의 선두주자로서, 4,000억대의 칩시장(한겨레신문, 1996년11월 25일, 10쪽)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주민카드의 제조단가가 12,000원일 경우-한겨레신문-1996. 11. 25. 10면)

또한 부수적인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황금알 품은 "초첨단 마술카드"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로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한국전산원예상 칩가격(3~7만원)	한겨레 분석 칩가격(12,000원)	내무부예산 (5,147원)
3천4백만 명발급기준(추계)	1조2천억원	4,080억원	1750억원 (카드구입비)
※ IC카드의 시장가격과 내무부 예산과의 차이가 2배이상 최고 6배까지 되는데 이에 대해 특정기업에 의한 로비와 그에 따른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 참여희망기업들이 외국의 회사와 기술제휴를 하여 칩생산라인을 만드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35개 항목의 국민 개인정보가 다른나라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벌써 일본의 히타치, SGS-톰슨 등 외국기업과 제휴해 칩생산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6. 11. 25-, 10면)

라. 또한, IC카드기술분야에서 앞서있는 프랑스가 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IC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영역에 있어서의 스마트 카드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프랑스 문화원을 방문하여 확인함)

마. 많은 선진국에서는 신분카드에 있어서 IC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는 없으며, 실시하려던 나라에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이 계획을 철회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에서 이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어설픈 주장까지 하고 있다.

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전자주민카드계획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책입안을 하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사. 내무부의 주민카드기획단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 경찰청,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 정보학 교수, 전산망 사업자들로 구성되 있다. (한국YMCA 소식지(1997.4), 9쪽).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대표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반대견해를 표출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하는데도 내무부의 추진의 기본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내무부, 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각계의견수렴 보완결과 참조)

4. 정보기관의 참여에 대한 의혹을 풀어 주지 못하고 있다.

가. 전자주민카드사업에 국가안전기획부의 참여는 정보통제사회를 여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거주관계 및 인구이동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전자카드화하면서 대외정보기관인 안기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과거 정보공작에 시달려 온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하나, 참여자가 대공담당자이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다. 또한 보안알고리듬(암호화장치)을 안기부에서 고안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지금까지 국가안전기획부는 주민카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내무부에서만 안기부는 보안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5.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가. 프라이버시는 경제력이 있는 이들만의 특권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사사로운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비밀을 부당히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국민은 자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권의 핵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인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라.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현재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 (시민의 신문, 1996.11.11, 6면)는 문제인식처럼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태이다.

마. 실례로, 외국에서는 지문날인이라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10지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하고, 주민등록증에 엄지지문을 날인하고 있는 것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 개인의 사생활은 국가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선 안될 '인권'이다. 경총이 지난 연세대 사태 관련 학생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사회는 '프라아버시 불감증'에 빠져 있다. (김형준, PC통신 '참세상' 운영자)

사.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대형(Big Brother)적 사고에서 탈출해야 한다. 국가의 대형적 사고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주향, '1984' 오고 있는가?, 경향신문, 1997.6.10. 5면)

또한 영화 〈네트〉의 안젤라 베넷처럼 정부의 전산망에 있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지워져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97.7.10)

아. 이처럼 중요한 사생활정보를 국가전산망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의 의견에 동조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생활권의 중요성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으로 여겨진다.

6. 정보화는 개인정보의 전산화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의미

가 있다.

가. 정부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내무부, 주민카드사업토론자료, 1997, 15쪽)

나. 정보화사회는 정보자체가 다른 재화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발전되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4, 399면)

다. 미디어리서치에서 실시한 정보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보화를 "산업의 급속한 발전, 생활의 편리성 추구" (응답자의 33.8%)로 이해하고 있다. (미디어리서치, 국정여론, 96.9, 8면)
그리고 정보화가 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더욱 늘어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2.3%가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라.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나 지식이 자원이나 상품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정보나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정보는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된다. 중요한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힘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마. 정보자원의 정부에 의한 통합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를 가능케 하는 큰 정부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바. 자치선거에 의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맡기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1. 주민카드정책의 입안자·추진책임자를 밝혀라.
2. 주민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3. 주민카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로비 의혹을 밝혀라.
4.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전자감시·통제의 전자주민카드계획을 철회하라.
5.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기자회견 발표문】

전자주민카드의 철회와 주민등록제의 개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신장은 물론 국가발전의 초석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통합을 통해 정보독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표합니다.

정보독재와 통제사회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로운 창의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90년대 초 동유럽과 구소련의 붕괴를 통해 우리는 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억압하여 국가와 민족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번 전자주민카드는 95년도 4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계획이 내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편익증진과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산업의 육성 그리고,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정책결정자 내지 주체들은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의 정책결정자들은 그 정체를 드러내서 3천4백만의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이 주민카드에 대한 책임기관이나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주민카드계획에 모종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를 내세우면서 배후조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전자주민카드철회를 계기로 실명행정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4천억에 가까운 IC칩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부대시설까지 1조 억원에 가까운 시장이 걸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기업들의 로비 또한 치열할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실체를 밝혀 이들에 대한 불매운동 등 다각적인 압력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할 경우 3천4백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 정보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파는 제2의 이완용이 나올 수도 있음을 참여 기업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각시키고자 합니다.

본 연맹에서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확인해 본 결과,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신분증을 전자카드화하는 것을 미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만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도 없었고,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발급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처럼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제재나 처벌을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IC카드의 선진국인 프랑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주민카드사업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수하여 주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는 외국에 없다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으며 완벽한 보안를 강조하면서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카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세대의 기술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음은 우리는 그동안의 기술발전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17조의 규정은 인간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됨을 우리는 이한영사건과 지존파사건 그리고 은행의 신용정보유출사건등에서 보아 왔습니다.

정부와 법의 중요한 목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의 7개 분야 35개항목의 정보를 IC카드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방비상태에 놓인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한 곳에 모으므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내무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혹 있을지 모르는 정보기관의 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전자주민카드계획과 이를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7. 15

법률소비자연맹

중 재 김 대 인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11. 13.

반 신 김기중(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제 목 「긴급상황」,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내무위 통과

0. 오늘(11. 13.)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민련 의원들의 갑작스러운 태도돌변으로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방심한 틈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활동부실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불을 어떻게 끌 것인지에 관한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0.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알려 드린 내무부의 수정안, 즉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주민등록등초본 수록사항, 병역사항, 지문을 수록하고,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0. 각 단체는 우선 긴급하게 이 상황을 여러 곳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이름으로 항의하는 보도자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0. 우선 공대위는 내일(11. 14.) 오전중으로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발송해 드린 「내무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0. 이후에 할 일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국회의 회기일정은 11. 18.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국회 법사위도 11. 17.(월)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금융개혁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법안(영장실질심사제)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즉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항의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항의전화를 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겠습니다.

0. 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방법은 시위와 기자회견인데, 시위는 48시간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빨라야 월요일이 될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표자 기자회견은 가능하기는 하나, 토요일(11. 15.) 오전중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소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0. 내무위원들과 법사위원들에 대한 항의방문이 당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전화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끝.

전산조직에 의한
대인부여
(세대번호)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修正案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第1條(目的) 이 法은 市(서울特別市·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住民을 登錄하게 함으로써 住民의 居住關係를 把握하고 常時로 人口의 動態를 明確히 하여 行政事務의 適正하고 簡易한 處理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特別市·廣域市----------.	第1條(目的)-------(特別市·廣域市----------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事務를 수행하는데 기초를 이루는 住民의 居住關係등 人口의 動態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住民生活의 便益을 증진시키고 行政事務의 適正한 처리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4條의2(他 法令에 의한 申告와의 관계) 住民의 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轉入申告가 있을 때에는 兵役法, 鄕土豫備軍設置法, 民防衛基本法, 印鑑證明法, 生活保護法, 醫療保險法 및 障碍人福祉法에 의한 居住地移動의 轉出申告와 轉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4條의2(다른 法令에 의한 申告와의 관계) ①---------- 轉入申告가 있는 때에는 兵役法·鄕土豫備軍設置法·民防衛基本法·印鑑證明法·生活保護法·醫療保險法·障碍人福祉法·國民年金法 및 道路交通法에 의한 居住地移動의 申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14條의2(다른 法令에 의한 申告와 의 관계)---------- 轉入申告가 있는 때에는 兵役法·鄕土豫備軍設置法·民防衛基本法·印鑑證明法·生活保護法·醫療保險法 및 障碍人福祉法에 의한 居住地移動의 轉出申告와 轉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新　設>	②住民登錄의 轉入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	<削　除>

	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에 規定된 法律 및 醫療保護法이 정하는 해당 機關에 居住地移動事項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17條의8(住民登錄證의 發給과 所持義務)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중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한다.	第17條의8(주민카드의 발급 등) ① ---------- 주민카드를 발급한다.	第17條의8(주민카드의 발급 등) ① ~ ⑥ (改正案과 같음)
<新 設>	②주민카드에는 第7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에 收錄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住民登錄資料"라 한다)을 收錄한다.	
② ~ ⑤ (省 略)	③~⑥(現行②~⑤와 같음)	
<新 設>	⑦주민카드를 발급받은 者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를 한 때에는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주민카드를 제출받아 居住地移動事項을 정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削 除>
⑥ ~ ⑧ (省 略)	<削 除>(現行⑥ ~ ⑧)	(改正案과 같음)

☆ 주민등록 등호는 인간에 상대적?

삭. 후수 세~세 기부?

第17條의9(住民登錄證에 의한 확인)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 社會團體, 一般企業體 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경우에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兵役事項, 寫眞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證憑書類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當該人의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의9(주민카드에 의한 閱覽) ①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社會團體·一般企業體----------姓名·住民登錄番號·本籍·住所·兵役事項·사진의----------주민카드로 확인하거나 本人의 同意를 받아 주민카드閱覽機(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하는 電算裝備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	第17條의9(주민카드에 의한 閱覽) ①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社會團體·一般企業體----------住民登錄資料의----------주민카드로 확인하거나 本人의 同意를 받아 주민카드閱覽機(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하는 電算裝備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
1. ~ 3. (생 략)	1. ~ 3. (現行과 같음)	1. ~ 3. (改正案과 같음)
<新 設>	②주민카드閱覽機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改正案과 같음)
第17條의10(住民登錄證의 提示 要求) ①司法警察官吏는 **間諜의 索出**, 犯人의 逮捕 등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住民의 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第17條의10(주민카드의 제시요구) ①---------- 주민카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第17條의10(주민카드의 제시요구) ①司法警察官吏가 犯人의 逮捕등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17歲이상인 住民의 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카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吏는 주민카드를 제시

		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 證票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가 확인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關係官署에서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한 司法警察官吏는 住民登錄證을 提示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 證票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가 確認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犯罪의 嫌疑가 있거나 間諜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에 限하여 隣近 關係官署에서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②---------- 주민카드의 제시를 요구한 ---------- 주민카드를 제시하지 아니한 ----------.	**②司法警察官吏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元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親切과 禮儀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身元을 표시하는 證票를 내보여야 한다. 다만, 正服勤務중에는 예외로 한다.**
③第1項의 司法警察官吏가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를 할 때에는 親切과 禮儀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身元을 表示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正服勤務中에는 例外로 한다.	③---------- 주민카드의 제시요구를 ----------내보여야 한다. ----------.	
<新 設>	第17條의12(주민카드의 收錄資料)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7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한 주민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住民登錄資料	第17條의12(주민카드의 收錄資料) ①----------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鑑證明法·道路交通法·國民年金法·醫療保險法·醫療保護法·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이 정하는 사항을 收錄할 수 있다.	-- 印鑑證明法이 ------ ---------- -------.
	②第1項에 規定된 法律이 정하는 증명서 기재사항을 주민카드에 收錄하여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그 收錄事項別로 해당 증명서의 발급·交付權者가 그 증명서를 발급 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改正案과 같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증명서의 발급·交付權者는 소관 주민카드資料(第17條의8第2項 및 第17條의1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민카드에 收錄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동사항을 주민카드에 정리할 수 있다.	③---------- ---------- ---------- ---------- ---------- ---------- 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제출받아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주민카드資料의 변동사항을 주민카드에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電算裝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은 주민카드資料 변동사항의 정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改正案과 같음)

	⑤第1項에 規定된 法律에서 주민카드에 收錄할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收錄하고 **病院診療記錄·交通法規 위반사항·財産狀態** 등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收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財産狀態등** ----------.
<新 設>	第17條의13(주민카드 收錄資料의 活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할 수 있다. 1. 本人 또는 그 위임을 받은 者 2. 住民登錄業務를 담당하는 者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이 가능한 者** 4. 關係法令에 따라 住民登錄資料의 閱覽을 필요로 하는 業務를 수행하는 者 **②第17條의1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민카드에 收錄된 사항의 活用 또는 閱覽範圍에 관한 사항은 해당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 그 收錄된 사항의 活用 또는 閱覽範圍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의13(주민카드 收錄資料의 活用) **다음** ----------. 1. ~ 2. (改正案과 같음) <創 除> 3. (改正案 第4號와 같음) <創 除>

<新 設>	第17條의14(주민카드발급센터의 設置 및 資料通報 등) ①內務部長官은 주민카드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設置하고, 발급센터로 하여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따라 주민카드發給業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급센터의 設置·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의14(주민카드발급센터의 設置 및 資料通報 등) ①·② (改正案과 같음)
	③內務部長官이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7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17條의11第1項·第5項의 規定에 의한 주민카드 발급 및 주민카드臨時證明書 발급을 위하여 關係機關의 長(第17條의1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민카드에 收錄되는 사항중 住民登錄資料 및 印鑑에 관한 資料를 제외한 資料를 관리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住民에 관한 資料를 요청하여야 한다.	<削 除>
	④關係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電算	<削 除>

	組織을 이용하여 內務部長官이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해당 住民에 관한 資料를 통보하여야 하며, 內務部長官은 주민카드 발급 즉시 關係機關의 長으로부터 통보받은 資料를 削除하여야 한다.	
	⑤주민카드發給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주민카드의 발급을 위하여 關係機關의 長으로부터 통보받은 資料를 주민카드발급외의 目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削 除>
	⑥주민카드資料의 관련 當事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代理人은 주민카드를 발급받은 후 발급센터의 資料에 관한 現況을 확인하기 위하여 書面으로 申請할 수 있으며, 確認申請을 받은 발급센터의 業務擔當者는 지체없이 申請人으로 하여금 발급센터의 資料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削 除>
<新 設>	第18條의4(주민카드資料의 安全性 확보등) ①第18條의3第1項의 規定은 內務部長官 또는 關係機關의 長이 주민카드資料를 관리함에 있어 이를 準用한다.	第18條의4(주민카드資料의 安全性 확보등) ①----------內務部長官이 ----------.

	②第18條의3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주민카드資料를 관리하는 者와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改正案과 같음)
	③內務部長官과 關係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급센터의 電算組織 運營者와 각 業務別 運營者(第17條의1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민카드에 收錄되는 사항을 이용하여 所管業務를 처리하는 者를 말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創 除>
	④이 法에 정하는 사항외에 주민카드資料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改正案 第4項과 같음)
<新 設>	第18條의5(주민카드의 個人資料 보호등) **①內務部長官과 關係機關의 長은** 주민카드資料의 誤用·남용 및 不法流出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별 秘密番號의 設定등 주민카드資料에 대한 保護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8條의5(주민카드의 個人資料 보호등) **①內務部長官은**----------.
	②주민카드資料를 이용 또는 活用하는 者는 주민카드閱覽機등 電算裝備를	② (改正案과 같음)

	이용하여 알아낸 資料를 당해 業務遂行의 目的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機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新 設>	第18條의6(주민카드資料保護委員會) ①주민카드의 합리적 운용과 주민카드資料의 誤用·남용 및 不法流出의 방지에 관하여 內務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內務部에 주민카드資料保護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주민카드資料의 이용 또는 資料提供의 범위 및 限界에 관한 사항 2. 주민카드資料의 調整에 관한 사항 3. 주민카드資料 보호를 위한 內務部長官 또는 關係機關의 長의 業務遂行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카드資料 보호에 관한 사항 ③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의6(주민카드資料保護委員會) <削 除> 위가 받은 신당 반대임

第21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1. 第17條의8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 發給年齡에 達한 者로서 發給通知를 받고도 정당한 事由없이 7月이내에 住民證錄證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2. 정당한 事由없이 第17條의8第7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紛失申告를 한 날로부터 80日이내에 住民登錄證再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第21條(罰則) ①<削 除>	第21條(罰則) ①(改正案과 같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나 住民登錄 또는 住民登錄證에 관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 또는 申請한 者 2. 第17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나 公告를 받고도 住民登錄을 忌避할 目的으로 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②----------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 1.----------주민카드---------- <削 除>	② (改正案과 같음) 1. ~ 2. (改正案과 같음)

3. 정당한 事由없이 第17條의2第3項이나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 拒否·忌避 또는 妨害한 者	<削 除>	
4. 住民登錄證을 債務履行의 確保등의 手段으로 提供한 者 또는 그 提供을 받은 者	2. 주민카드를---------- ----------.	
<新 設>	3. **第17條의1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할 權限이 없이 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한 者**(第17條의13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第17條의13의** 規定에 의하여 閱覽할 權限이 없이 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한 者. **(削 除)**
<新 設>	4. **第17條의14第5項 및 第18條의5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8條의5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18條의3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 위반한 者**(第18條의4第2項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 6. (改正案과 같음)
<新 設>	6. 다른 사람의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者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주민카드의 發給時期에 관한 特例) ①이 法중 주민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주민카드 발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別로 順次的으로 적용하되, **2000年 3月31日까지** 全國的으로 주민카드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주민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住民登錄證은 이 法에 의한 주민카드로 본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주민카드 발급이 全國的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받은 住民登錄證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住民登錄證을 인용한 경우 주민카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4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案修正案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第12條(書類의 提出) (생략) <新　設>	第12條(印鑑證明 및 확인) ① (현행 第12條와 같음) ② 特定人이 所持하는 印鑑과 印鑑화일에 收錄된 申告印鑑의 동일여부만을 判讀하고자 하는 者는 印鑑判讀機(印鑑의 印影은 표시되지 아니하고 所持印鑑과 印鑑화일에 收錄된 申告印鑑의 동일여부만을 判讀할 수 있는 電算裝備를 말한다)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동일여부를 判讀할 수 있다.	第12條(印鑑證明 및 확인) ① (현행 第12條와 같음) ② ----------印鑑判讀機(所持印鑑과 印鑑화일에 收錄된 申告印鑑의 동일여부만을 判讀할 수 있는 電算裝備를 말한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12. 30.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다는 당선자의 약속은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 688인 선언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 9. 중순경 법률소비자연맹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며 나아가 현재의 주민등록증제도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한편 김대중당선자도 다수 언론의 인터뷰와 1997. 12. 14.에 실시된 제3차 TV합동토론회 등에서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에 관련된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이 제도의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발급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일시에 3,400만장의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카드를 만들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추진주체들은 우선 제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둠으로써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된 많은 사업자들도 전자주민카드에 필요한 장비제조시설에 사전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를 보듯이 이렇게 사업의 기반시설을 미리 구축하게 되면 그 시행을 백지화시키기는 참으로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대중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는 이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굳히기'를 시도하려는 행정관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 외에도 국가부도사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IMF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급박한 국책사업이 아닌 것들은 이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포기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1998년도 예산은 그리 많지 않으나, **발급을 시작하는 1998년 12월부터는 몇천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미리 사업 포기의사를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장비가 사용되는데 그 기술과 장비의 대부분은 국내생산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무부는 이미 독일 멜처사, 미국 데이타카드사와 각각 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설사 카드와 관련장비의 국내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련 기술의 특허는 모두 외국의 것이므로 대규모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금액을 충전하고 지워가는 단순한 기능의 버스카드 조차 그 전량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뛰기부터 하려는 성급한 정책결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주민관리업무는 주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복지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다. 그런데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매개로 하여 주민관리업무를 전적으로 내무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설사 이러한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내무부와 중앙경찰청의 권한을 강화시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무부가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권한이 축소되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의 폐지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보다 인간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선자는 전자주민카드시행계획을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1962년에 극단적인 남북대치상황에서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도입된 주민등록제도를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정부합동으로 가칭 「주민등록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 심지어 개인에 의하여 쉽게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부분과 사적부분을 포괄하는 가칭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동대표 김진균, 김창국

선언자 명단 별첨

선언자 명단

종교계

가톨릭(신부)

강승한(서울교구), 강종훈(광주가톨릭대학교), 고봉호(전주교구 둔율동성당), 곽동철(청주교구 사직1동성당), 권병식(광주교구 흑산도성당), 권완성(전주교구 주현동성당), 권이복(전주교구 순창성당), 권혁동(서울교구 천호동성당), 김계홍(광주교구 주월동성당), 김교동(전주교구 도룡동성당), 김권일(청주교구 사직2동성당), 김기곤(전주교구 성글라라수도원), 김남오(청주교구 앙성성당), 김병상(인천교구 만수3동성당), 김봉술(전주교구 송천동성당), 김상효(부산교구 덕신성당), 김성용(광주교구 완도성당), 김승훈(서울교구 시흥동성당), 김양희(광주교구 산정동성당), 김영권(광주교구 교육국), 김영욱(인천교구 주안5동성당), 김용원(광주교구 구례성당), 김인국(청주교구 광혜원성당), 김재기(광주교구 두암동성당), 김종길(광주교구 원동성당), 김종수(광주교구 학운동성당), 김진철(전주교구 소양성당), 김택암(서울교구 문정동성당), 김혁태(전주교구 숲정이성당), 김현영(부산교구 만덕성당), 김홍진(서울교구 발산동성당), 김훈(전주교구 오룡동성당), 나승구(서울교구 평신도사목), 남국현(서울교구 길음동성당), 남승택(광주 가톨릭대 교수), 남학현(서울교구 구리성당), 문규현(전주교구 서학동성당), 문정현(전주교구 오룡동성당), 박기준(전주교구 교육국장), 박기호(서울교구 도림동성당), 박병준(전주교구 동산성당), 박비오(광주교구 노동사목), 박상선(광주교구 압해도성당), 박선용(로마 거주), 박승원(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박옥규(광주교구 문흥동성당), 박은종(서울교구 잠원동성당), 박인호(전주교구), 박재천(전 천주교도시빈민회 회장), 박종근(전주교구 천호피정의집), 박종탁(전주교구 임실성당), 박창신(전주교구 무주성당), 박창일(인천교구 연안성당), 박창진(광주교구 화순성당), 박청일(청주교구 음성성당), 방의성(전주교구 송학동성당), 배상복(부산교구 사회복지위원회), 배행기(광주교구 신동성당), 서정현(전주교구 효자동성당), 석판홍(부산교구 온천성당), 손덕만(부산교구 용호성당), 송기인(부산교구 교회사 연구소), 송영진(전주교구 전동성당), 신성국(청주교구), 신순근(청주교구 내덕2동성당), 신인용(청주교구 영동성당) , 심용섭(서울교구 아현동성당), 안충석(서울교구 사당동성당), 양경배(전주교구 함열성당), 양석현(전주교구 고산성당), 양요섭(부산교구 반여성당), 오동영(청주교구 오송성당), 오용호(인천교구 가정3동성당), 오정선(전주교구 창인동성당), 윤희동(부산교구 초량성당), 이 동(전주교구 진안성당), 이득재(전주교구 사운성당), 이봉문(광주교구 운남성당), 이부언(광주교구 동림동성당), 이상섭(전주교구 평화동성당), 이상용(전주교구 노원성당), 이상회(광주교구 운암동성당), 이성균(부산교구 반송성당), 이성우(전주교구 화산동성당), 이영선(광주교구 영광성당), 이영우(서울교구 교정사목), 이완재(전주교구 봉동성당), 이재만(부산교구 성지성당), 이재술(광주교구 박림동성당), 이정화(광주교구 광천동성당), 이준오(광주교구 청계성당), 이중섭(청주교구 감곡성당), 이천수(광주교구 강진성당), 이철학(서울교구 평화시장성당), 이태종(청주교구 수곡동성당), 이혁구(전주교구) , 이현로(청주교구), 임병태(광주교구 노안성당), 장루시아수녀, 장세현(광주교구 사목국장), 장용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광주교구 중흥동성당), 전종훈(서울교구 전곡성당), 정승현(전주교구 복자성당), 정진호(서울교구 직장인사목), 정형달(광주교구 문흥동성당), 조성제(부산교구 도시빈민사목), 조성학(청주교구 사회복지국), 조영대(광주교구 북동성당), 조욱종(부산교구 장유성당), 조창현(광주교구 중흥동성당), 주영돈(부산교구 울산성당), 진용민(광주교구 교구장비서), 차광호(마산교구 교육국장), 최광조(청주교구 중평성당), 최광혁(청주교구 청산성당), 최민석(광주교구 우산동성당), 최상진(인천교구 중동성당), 최이레네 수녀, 최종수(전주교구 금암동성당), 한병헌(전주교구 상삼례성당), 한세종(광주교구 월곡동성당), 한정현(전주교구 원평성당), 함세웅(서울교구 상도동성당), 홍승의(청주교구 학산성당), 황양주(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광주교구 금호동성당), **이상 함세웅신부 외 124명**

개신교(목사)

고영근, 김경남, 김경호, 김관석, 김광수, 김귀동, 김기석, 김기택, 김동완, 김상근, 김성일, 김영주, 김영철, 김재열, 김재일, 김정택, 김종구, 김종채, 김진호, 김태규, 나핵집, 문대곤, 문장식, 박경양, 박경조, 박덕신, 박종렬, 박종화, 박형규, 서광연, 손은하, 송유언, 신경하, 신동근, 신동욱, 신익호, 신종선, 오용식,

유원규, 유창복, 윤두호, 윤문자, 윤용웅, 이경춘, 이규상, 이근복, 이대용, 이병창, 이영민, 이영일, 이인규, 이재수, 이정일, 이정학, 이춘섭, 이해동, 이혜석, 인원영, 임광빈, 임홍기, 장성룡, 전용환, 정명기, 정상복, 정진우, 정태준, 정해동, 조이제, 조홍벽, 진방주, 차선각, 천용욱, 최완택, 최의팔, 최재권, 추요한, 하태영, 허병섭, 허원배, 홍근수, 김용현, 황남덕, 강은숙, 김언영, 안기성, 성해용, 이재철, 윤길수, 강우경, 임광빈, 진방주, 정태효, 김혜숙, 박후임, 장창원, 오상열, 김낙경, 이문숙, 황필규, 이경호, 김기석, 박기백, 김명중, 성강수, 송유성, 변기수, 변경수, 이은재, 장석재, 최은식, 김근상, 조성기, 박정진, 김복기(이상 서울)

구행모, 김성북, 김해성, 박봉양, 박영모, 윤기석, 윤길수, 윤문자, 이규학, 이 진, 이혜학, 정한식, 최창수, 허춘중, 황규록, 정명기(이상 경기)

권영각, 구기환, 김광재, 김선우, 김영배, 김영윤, 김원진, 김정웅, 김종화, 김최환, 김창규, 김형태, 김태종, 노영우, 노정길, 민홍기, 박만규, 박승휘, 박용래, 박일우, 박찬홍, 박화원, 배영도, 변철규, 서정소, 성귀영, 신동신, 신언식, 안기중, 이도형, 이명남, 이종명, 이충재, 임인수, 임현재, 장성택, 정지강, 정현근, 조지송, 지철수, 최재권, 최현성, 추교화, 한길동, 허창두(이상 충청)

강원하, 김송달, 김종만, 김종석, 김찬국, 박선호, 손명철, 안상혁, 여윤택, 원기준, 유재무, 이동연, 조화순, 최승렬, 한경호, 한기동, 한석진, 조규백, 백성현(이상 강원)

권헌선, 공명탁, 금창락, 김상천, 김상혜, 김영수, 김용환, 김세민, 김진석, 김치영, 김홍숙, 문준식, 백낙기, 석준복, 염영일, 오규섭, 원형온, 이동규, 이동원, 이승정, 이종삼, 이천우, 장승현, 전재식, 한기양, 현순호, 현제식(이상 영남)

강신석, 고민영, 김경식, 김동건, 김민혜, 김병균, 김성철, 김용대, 김천일, 김현식, 문정식, 박종표, 백남운, 선진영, 신삼식, 오충일, 우영수, 유승기, 이기봉, 이동균, 이동련, 이철우, 임기준, 전병생, 전양권, 정우경, 최희섭, 허종현(이상 호남), **이상 박형규목사 외 248명**

학계(교수) 및 학술계

강내희(중앙대), 곽노현(방송대), 김넝(서강대), 김세균(서울대), 김용수(한양대), 김영규(인하대), 김진균(서울대), 김진철(동국대), 남구현(한신대),박거용(상명대), 박상환(성대), 박영근(중앙대), 서관모(충북대), 안병욱(카톨릭대), 오세철(연세대), 유초하(충북대), 장임원(중앙대), 임종대(한신대), 손호철(서강대), 한인섭(서울대), 이세영(한신대), 김홍식(중대), 장근상(중대), 현중식(중앙대), 김순경(중앙대), 공제욱(상지대), 강명구(서울대), 한인섭(서울대), 조희연(성공회신학대), 이혜영(한신대), 강치원(강원대), 김상곤(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상조(한성대), 강남훈(한남대), 김수행(서울대), 박정원(상지대), 김성구(한신대), 성염(서강대), 정병철(명지대), 최갑수(서울대), 김선종(성대), 김영수, 조현연, 김태진, 조임숙, 박태호(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귀영(서울사회과학연구소), 고훈석(새길 출판사 대표), 김태경(이론과 실천), **이상 김진균교수 외 49명**

법조계(변호사)

강금실, 강대성, 고연금, 고영구, 고태관, 김갑배, 김기열 , 김기중, 김기진,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명한, 김문희, 김병주, 김봉석, 김석연, 김선수, 김우진, 김원근, 김원일, 김원일, 김응조, 김인만, 김인회, 김재영, 김제완, 김종길, 김종률, 김주영, 김주원, 김준곤, 김진국, 김진욱, 김창국, 김춘식, 김칠준, 김한수, 김한주, 김향동, 김현종 김형태, 김호철, 나완수, 남성렬, 노정희, 도건철, 도재형, 라종훈, 문병상, 문병호, 문한성, 민경한, 박교선, 박성민, 박성호, 박세경, 박수근, 박승옥, 박연철, 박영립, 박영배, 박용일, 박원순, 박인구, 박인제, 박재규, 박주현, 박진순, 박헌권, 박형상, 백승헌, 서영섭, 선병주, 손광운, 송두환, 송영길, 송창현, 송해익, 신장수, 신현호, 심규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양영태, 양태훈, 안호영, 오세훈, 오승진, 오양호, 오종한, 유남영, 유선영, 유선호, 유 욱, 유중원, 유현식, 유효식, 윤기원, 윤종

현, 윤 학, 이경우, 이기욱, 이기영, 이덕우, 이돈명, 이벽수, 이병주, 이상경, 이상수, 이상중, 이상호, 이석범, 이석연, 이석태, 이승희, 이양원, 이영직, 이오영, 이용철,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인호, 이재명, 이정한, 이종걸, 이종필, 이찬진 , 이해진, 이현범, 이형근, 이호일, 이홍식, 이후동, 임영화, 임재연, 임종인, 임채균, 임 호, 임홍종, 장광수, 장완익, 장주영, 장철우, 전병남, 전혜철, 정미화 , 정성호, 정연순, 정영원, 정웅태, 정종섭, 정주식, 정태상, 조광희, 조두연, 조병용, 조상희, 조용환, 조준희, 진효근, 차규근, 차병직, 차지훈, 차홍권, 천낙붕, 천정배, 최병모, 최봉태, 최승수, 최영도, 최원식, 최은순, 최일숙, 최재천, 표재진, 하영석, 한승헌, 한이봉, 한정화, 한택근, 황인택, 강동규, 강명득, 강재현, 권오형, 권태하, 김대희, 김상국, 김외숙, 문재인, 박승환, 박윤성, 석진국, 송철호, 윤인섭, 윤여진, 이재호, 장운영, 전극수, 정 운, 정일수, 정재성, 정주석, 정한중, 조성래, 조우래, 조현래, 차정인, 최성주, 이강노, 김용섭, 김귀덕, 남현우, 정덕진, 소삼영, 김연수, 이 현, 송동호 , 이현주, **이상 최영도변호사 외 263명**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운동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운동입니다.

비밀보장 대책없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온국민이 범죄자냐?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안전장치 마련없이 전자주민증 웬말이냐. 프라이버시 보장! 전자주민증 반대!

안전장치 마련없이 전자주민증 웬말이냐.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후진적이며 인권침해적인 현재의 신분증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불필요하게 등초본 등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을 제정하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주민등록법개정안 통과저지 결의대회'

97. 7. 15. 낮 12시~2시 국회앞 장기신용은행앞

-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이유
- 정부의 파행추진에 대한 규탄과 지역대책위 상황보고
- 시민자유발언
- 퍼포먼스
- 성명서 낭독
- 신한국당사까지 행진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 민/ 사/ 회/ 단/ 체/ 공/ 동/ 대/ 책/ 위/ 원/ 회

전자주민카드, 당신의 사생활이 위협받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지문 등 7개 분야 35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통합, 수록한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집중이 되며, 모든 국민은 이를 휴대하지 않으면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전하는 만큼 전자주민카드가 효율적인지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줄 지 곰곰히 되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 민/ 사/ 회/ 단/ 체/ 공/ 동/ 대/ 책/ 위/ 원/ 회

정부는 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내무부 추진문서에 나와 있는 정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시기가 되었고 위변조가 용이한 종이증명서 보다는 기왕에 바꿀 바에야 관리가 편한 전자카드로 바꾸자, 또 바꿀 바에야 여러 증명을 합치면 효율적이겠다.' 여기다 연간 1억 7천만통의 증명 발급비용과 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 감축 효과를 운운하며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신분증으로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정부의 3천억 투자와 각종시스템에 드는 비용, 관리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약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전망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을 계속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적인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기전에...

공안망의 정보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안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산망보안을 안기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인식속의 '안기부'를 떠올린다면 별로 달갑지는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를 만든다면 그전에 지금까지 정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 한점의 의혹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먼저

사생활 정보의 유출이 개인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심부름센터 직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부터 백화점 고객명부를 입수하여 범죄에 악용한 94년 지존파 사건과 지난 봄 이한영씨 피격사망사건의 경우 교도소와 심부름센터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한 사람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싶다면 먼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대책위 연락처 전화 : (02) 879-0871 팩스 : 874-2935 PC통신 : kijoongv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pd.sing-kr.org/idcard/

후원을 기다립니다
상업은행 167-07-123558 <홍석만 (전자카드)>
국민은행 812-01-0134-240 <홍석만 (전자카드)>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의 문제점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증명서의 발급업무만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제도 실시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재정할 필요가 없고, 각 증명서들의 발급과 서식만 개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7가지 증명을 통합하는 것은 카드 겉면에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외에 운전면허, 의료보험증의 기본사항이 전부 기재되므로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전자주민카드는 형태와 내용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분증명체계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카드발급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더구나 정부는 이 많은 비용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17세 이상의 성인남녀들은 개인당 3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발급 건수를 생각해 볼 때(현재 주민등록증 연간 300만건 재발급) 국민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해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발급사업에 참여한 일부 국내 재벌과 외국의 자본에게 고스란히 바쳐주고, 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내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유출되어서 악용될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사례들은 개인정보가 높은 상품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은 시스템과 보안상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사람의 손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유출은 해킹 뿐만아니라 정보의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이 오히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내부 공모에 의한 유출사례가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통합, 전산망에 묶어두는 것은 고양이게게 생선을 주는 격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는지 파악해 봅시다. 국민생활의 불편은 여러개 증명이 따로 나뉘어져 지갑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때 없이 많은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인감증명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할 생각보다는 복잡한 증명을 한데로 묶어 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결코 21세기 지향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복잡다양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가수미카드

법률소비자연맹
CENTER FOR JUSTICE & HUMAN RIGHTS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11 (산우빌딩)
전화 : (02)523-8760(대표) FAX : (02)585-9228~9

인권과 법현실 / 시민헌법학습회 / 사법정의연구소 / 법률시민대학 / 대학생법생활연수원 / 불공정피해대책협 / 인권변호사단 / 입법·사법감시단

성 명 서

경악! 분노! 규탄!

정권교체 · 혼란기를 틈타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인권관련 최주요법안(형사소송법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인감증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개악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이유인 사생활보호와 인권보장을 포기하고, 국가발전를 저해케 하는데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들 법률안의 자진철회를 촉구하고, 졸속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정권교체와 혼란을 틈타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천주교인권위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행정편의와 수사편의를 위해

1. 국민의 최중요한 기본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 영장실질심사제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2. 17세 이상의 전국민 3천 4백만명의 신분증을 일시에 IC칩이 내장된